

WISET 공고 제 2018-006호

2018년도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Returner)」 (상반기) 예비 공고

2018년도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 (상반기)신규
과제 참여를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및 연구기관의 수요를
파악하고 사전 매칭(예비 참여기관 및 인력 간 일자리 연계) 기회를 제
공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예비 공고를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8년 1월 23일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 한화진

1. 예비 공고 개요

가. 공고 기간 : 2018. 1. 23.(화) ~ 2018. 2. 21.(수)

나. 신청 기간 : 예비 공고 기간과 동일

다. 신청 대상 : 2018년 상반기 사업 참여 희망 인력 및 기관

1) 참여인력

가) 이공계 석사이상 학위(또는 동등학력*) 소지자로, 임신·출산·육아
가족구성원 돌봄·건강·계약만료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었거나,
해당 사유로 미취업 중인 여성

* '이공계 학사로서 업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이공계 전공자가 아닌 경우,
과학기술분야 업무경력 3년 이상인 자'는 동등학력으로 인정됨

* 기타 동등학력 인정범위 및 신청자격 : [붙임] 참조

2) 참여기관

가)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제1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기업부설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의한 '연구소기업'
- * 기타 지식재산서비스 및 학술연구용역 등 과학기술분야 관련 업무 수행 기관
- * 기타 참여기관 신청자격 : [붙임] 참조

라. 신청 방법 : 온라인 등록 www.wiset.or.kr/wedodream

(<별첨> 예비신청 기관/인력 온라인등록매뉴얼 참조)

1) 연구기관 : 기업회원 가입 > 채용공고 등록

- ※ 채용공고 제목에 '[경력복귀 예비등록]' 말머리 필수 기재
- ※ '경력단절 여성 우대', '공고 노출' 반드시 체크

2) 경력단절 여성 : 개인회원 가입 > 예비복귀자 등록

- ※ 예비등록확인 탭에 '2018년 상반기 예비등록' 필수 기재
- ※ '주요 경력 및 대표연구실적', '교육 및 자격사항' 내용 상세 기재 요망

마. 우대사항

1) 예비 공고 기간 동안 과제(채용공고) 또는 예비복귀자로 등록하고 두드림 사이트를 통해 매칭되어 본 공고의 사업 신청 시, 가점 1점 부여

2) 두드림 사이트를 통해 매칭된 경우, 사업 신청 전 既채용 가능

- ※ 사업신청은 본 공고 기간('18. 2월~4월)에 가능

2. 사업 내용

가. 사업 목적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의 과학기술 R&D 분야 복귀 지원을 통해 여성과학기술인 우수 방지 및 활용률 제고

나. 지원내용

1) 지원기간 : 최대 3년 (1년 단위로 계속지원 여부 평가)

연차	지원기간	비고
1년차	2018년 5월 1일 ~ 2019년 4월 30일	※ 연차별 12개월 ※ 연차별 성과평가로 계속지원 결정
2년차	2019년 5월 1일 ~ 2020년 4월 30일	
3년차	2020년 5월 1일 ~ 2021년 4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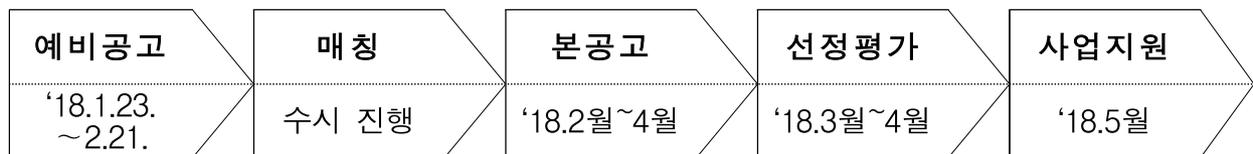
2) 지원내용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 및 연구개발 참여 지원

- (연구비)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비(인건비 포함)
- (교육·멘토링) 연구역량 및 경력 개발 지원 교육·멘토링·컨설팅

3) 지원규모 : 1인당 2,200만원 내외 지원

※ 시간선택제로 채용가능하며, 시간선택제 근무 시 정부지원금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계약된 연봉의 1.05배를 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최대금액을 지급

3. 2018년도 사업 향후 일정



- 예비 신청 연구기관 및 경력단절 여성 온라인 매칭 : '18.1.23.~2.21.
- 2018년도 사업 본 공고 실시(예정) : '18.2.22.~4.22.(60일간)
- 2018년도 신규과제 선정평가 실시 : '18.3월, 4월(1·2차로 나누어 진행)
- 2018년도 신규과제 협약체결 및 지원 시작 : '18.5월

4. 문의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정책사업실 R&D경력복귀지원팀
(TEL) 02-6411-1015, 1064, 1072
(EMAIL) jhhwang@wiset.or.kr, jhlee@wiset.or.kr, yhkim@wiset.or.kr

붙임 참여인력 및 참여기관 신청자격

1. 참여인력 : 다음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이공계 석사 이상 학위(또는 동등학력) 소지자

※ 의·약학, 치의학, 디자인 학위 소지자 신청 가능(단, 복귀 후 업무는 R&D 관련 업무이어야 함)

< 동등학력 인정 >

-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의·약학, 치의학, 디자인 학위 포함)로서 연구직·기술직·연구지원/관리직·교육직 등의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비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과학기술분야 연구직·기술직·연구지원/관리직·교육직 등의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이상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산업디자인분야 및 지식기반서비스분야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산업디자인분야 및 지식기반서비스분야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2급 또는 단일 등급 소유자로서, 해당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전문학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이상 근무한 사람

② 임신, 출산, 육아, 가족구성원 돌봄, 건강, 계약만료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 또는 해당 사유로 미취업 중인 여성

※ 경력단절 사유는 신청인력이 제출한 사업신청서의 작성내용을 서약서로 같음하여 확인함.

- 사업신청일 기준, 이공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2년 이상 경력과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자가 석사학위 과정 중이거나, 이공계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자가 박사학위 과정 중인 경우더라도 임신, 출산, 육아, 가족구성원 돌봄, 건강, 계약만료 등으로 인해 경력단절 혹은 미취업의 사유가 있을 시 사업신청 가능

☞ 단, 사업 선정 후, 참여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 근무가 가능해야 함.

③ 사업신청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함

- 시간강사, 3개월 이내 일용직, 3개월 이내 단기간 근무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신청 가능

2. 참여기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신청 가능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의한 '연구소기업' 신청 가능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 제6조 제1항(기초연구사업 추진 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 **국립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제14조 제1항(특정연구개발사업 추진 기관)
 - 동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의료인 2명 이상과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의료법인**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업주 포함 1명 이상의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1인 창조기업**
 - 그밖에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

○ (신청조건)

- ① 정부지원금 대비 **30% 이상 기관부담금**(현금, 현물 가능)을 대응하여야 함.
 - ※ 현금/현물 대응 비율의 최소/최대 제한조건 없음.
- ② 채용한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4대보험 및 퇴직금**을 필수로 제공하여야 함.